

제 안 설 명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경 과

가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나. 제안일자 : 2007년 1월 22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6회 임시회

- 2007년 1월 22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강태원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간사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중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
- 부위원장 명칭을 부의장으로 용어를 정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 간사 명칭변경
 -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함. (안제54조, 안제66조, 67조의2)
- 용어 정정
 - 부위원장 명칭을 부의장으로 용어를 바로잡음.(안 제67조의2)

3. 검토보고요지

(의회운영전문위원 윤기관)

- 본 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부위원장 명칭과 부합되도록 회의규칙 중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

- 제67조의2 준용규정 중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정정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규칙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 가결”

7. 기타의견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제66조제3항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제67조의2(준용규정) “부위원장을 간사로”를 “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4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<u>간사와</u>	제54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<u>부위원장과</u>
제66조(위원회 회의록) ①~② (생략) ③ <u>간사가</u>	제66조(위원회 회의록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부위원장이</u>
제67조의2(준용규정) <u>부위원장을 간사로</u>	제67조의2(준용규정) <u>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</u>